

의안번호	2201013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4. 7. 15.
추 계 번호	24C12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3,160억원 (연평균 4,63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제63조의2 삭제)	3,375	3,911	4,533	5,253	6,088	23,160	4,6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삭제	노령연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삭제	○	○ 2019~2023년 실적치 추세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증액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

[표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개요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주: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19~2023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표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금액 추이: 2019~202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총 감액 금액	120,153	169,941	172,486	190,620	216,778	15.9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375억원, 2030년 6,088억원 등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 3,160억원(연평균 4,632억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제63조의2 삭제)	3,375	3,911	4,533	5,253	6,088	23,160	4,6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